

**부속서 I-나**  
**말레이시아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목록은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말레이시아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5조(최혜국 대우)

라. 제8.6조(현지주재)

마. 제11.10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1.11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지칭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관련의무**는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명시한다. 그리고

바.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거나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하지 않는다.

4. 한국의 양허표는 이 협정의 제8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1장(투자) 또는 다른 장들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 또는 의무를 해석하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

5. 제8.6조(현지 주재) 및 제8.3조(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6조(현지 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3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할 필요가 없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 및 체류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9-가(구체적 약속)에 규정된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현지주재(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만이 말레이시아에서 단독소유기업 또는 파트너십을 등록할 수 있다. 외국국민은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을 등록할 수 있으나 준법감시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다.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내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1956년 사업등록법[법 제197호] 2012년 유한책임파트너십법[법 제743호] 1993년 협동조합법[법 제502호] 1932년 상호 법령[사라왁 제64호] (1958판) 1955년 사업·직업·무역 면허 법령[사라왁 제33호] (1958판) 무역 면허 법령[사바 제144호] 2016년 회사법 [법 제777호] 유한책임파트너십의 등록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1.4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비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1명은 말레이시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말레이시아에 상시적으로 거주한다.</p> <p>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상장회사의 이사 중 최소 2명은 말레이시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말레이시아에 상시적으로 거주한다.</p>
	조치	:	2016년 회사법[법 제777호]

3	분야	:	수산업
	하위분야	:	해양 포획 수산업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3조 및 제11.4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이행요건(제11.10조) 현지주재(제8.6조)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어떠한 외국 어선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말레이시아 수산업 수역<sup>1</sup>에서 다음을 행하지 않는다.</p> <p>가. 어떠한 어류, 연료 또는 보급품의 선적 또는 하역 나. 어떠한 어류의 환적 다. 어로 또는 어로 시도, 또는 라. 어떠한 수산업에 대한 기술경제 연구 또는 수역 조사</p> <p>말레이시아 수산업 수역에서 외국 어선의 어로를 위한 허가 신청은 그러한 어선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및 금융적 책임을 지는 말레이시아 대리인을 통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어선” 이란 다음의 용도로 사용 또는 사용되도록 장비를 갖추거나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형의 모든 보트, 특수선박, 배 또는 그 밖의 선박을 말한다.</p> <p>가. 어업, 또는 나. 어류 준비, 가공, 냉장, 보관, 공급 또는 운송의 모든 행위</p>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85년 수산업법」 [법 제317호]에 따라, “말레이시아 수산업 수역” 이란 법에 의하여 배타적 어업권 또는 수산업 관리권이 주장되는 말레이시아 관할하의 해양 수역을 말하며, 말레이시아의 내수, 말레이시아의 영해 및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성되는 해양 수역을 포함한다.

	를 포함하여 어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보트, 특수선박, 배 또는 그 밖의 선박을 돋거나 지원하는 행위
조치	: 1985년 수산업법[법 제317호] 1971년 말레이시아 수산업개발청법[법 제49호] 1984년 배타적 경제수역법[법 제311호] 1966년 대륙붕법[법 제83호]

4	분야	특허 대리인 서비스 상표 대리인 서비스 저작권 대표자 산업디자인 대리인 서비스 지리적 표시 대리인 서비스
	하위분야	-
	정부수준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현지주재(제8.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이면서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MyIPO)에 등록된 인만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 개업 또는 활동하도록 허용된다.</p> <p>말레이시아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이거나 말레이시아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MyIPO)에 등록된 인만이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산업디자인 또는 지리적 표시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 개업 또는 활동하도록 허용된다.</p> <p>말레이시아에 거주하거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인 모든 인 또는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등록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저작권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된다.</p>
	조치	1983년 특허법[법 제291호] 1976년 상표법[법 제175호] 1996년 산업디자인법[법 제552호] 2000년 지리적표시법[법 제602호]

1987년 저작권법 [법 제332호]

5	분야	:         다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인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적산 서비스 토지측량 서비스 건축 서비스
	하위분야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시장접근(제8.5 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관련 전문 직업인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적격 인은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적산, 토지측량 및 건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건축 서비스는 말레이시아의 관련 전문 직업인 위원회에 등록된 전문 직업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산 및 건축 자문 업무는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전문 직업인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설립체의 경우,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가 등록되고 승인받은 전문 직업인이어야 한다. 이는 등록되고 승인받은 전문 건축사, 개업 증명서를 소지한 전문 엔지니어, 또는 적산 사로 구성된 복수 전문직 간 동업(MDP)의 모든 이사회에도 적용된다
	조치	:         1967년 엔지니어등록법(2015년 개정) [법 제138호]

1990년 엔지니어등록 규정 [P.U.(A) 제128/90호]  
1958년 면허 받은 토지측량사법(1992년 개정) [법 제458호]  
1967년 건축사법(2015년 개정) [법 제117호]  
1996년 건축사 규칙(2022년 개정) [P.U.(A) 제379/96호]  
1967년 적산사법 [법 제487호]  
1973년 적산사 규칙 [P.U.(A) 제366/73호]  
1994년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법 [법 제520호]  
2001년 토지측량사 법령 [사라왁 제40호]  
1960년 측량사 법령  
2019년 측량사 규칙 (개정)  
행정 지침

6	분야	: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산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현지주재(제8.6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평가사 · 감정인 · 부동산중개인 및 자산관리인 위원회에 등록된 인 및 등록된 승인 받은 외국인만이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 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치	:	1981년 평가사 · 감정인 · 부동산중개인법 [법 제242호] 1986년 평가사 · 감정인 · 부동산중개인 규칙 [P.U.(A) 제 64/1986호] 1999년 평가 및 자산 서비스 규칙 [P.U(A) 제382/99호]

7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	통신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 내 통신 서비스 공급 면허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면허와 등급 면허로 나누어진다.</p> <p>다음의 인 또는 인의 집단은 개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p> <p>가. 「2016년 회사법」 [법 제777호]에 정의된 외국 회사 나. 개인 또는 단독소유기업 다. 파트너십, 그리고 라. 장관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인 또는 인의 집단</p> <p>다음의 인 또는 인의 집단은 등급 면허 소지자로서 등록할 자격이 없다.</p> <p>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개인, 그리고 나. 「2016년 회사법」 [법 제777호]에 정의된 외국 회사</p> <p>외국인은 위성방송, 가입형 방송, 지상파 무료 텔레비전 또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지칭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의 특</p>

	<p>별 부분 집합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를 위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p> <p>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장관은, 정당한 사유로 또는 공익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위의 인 중 어느 한쪽이 위에 언급된 허가 소지자 중 하나로 등록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조치	<p>:</p> <p>1998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법 [법 제588호]  2000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허가)규정 [P.U.(A) 제129/2000호]</p>

8	분야	:	민간 교육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민간 교육 서비스, 기술 훈련 센터 및 직업 기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등록 및 설립되고 승인을 받은 교육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p>
	조치	:	<p>1996년 교육법[법 제550호]</p> <p>1996년 민간고등교육기관법[법 제555호]</p> <p>2006년 국가기술개발법[법 제652호]</p> <p>행정 지침</p>

9	분야	: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민간 보건의료 시설과 보건의료 서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등록 및 설립되거나 매입, 합병 또는 인수를 통하여 획득하고 승인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p> <p><b>전문 의료 서비스</b></p> <p>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의료 위원회로부터 정식 등록 및 전문의 등록을 부여받지 않는 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b>전문 치의료 서비스</b></p> <p>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치의료 위원회로부터 임시 개업 증명서를 부여받고 전문가로 인정받지 않는 한 전문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b>연합 보건 서비스</b></p> <p>외국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임시 개업 증명서를 부여받고 말레이</p>

	<p>시아 연합 보건 전문직 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규제 기관에 의해 인정받지 않는 한 연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b>약사</b></p> <p>외국인 약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 및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약학 위원회와 관련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의약품을 준비, 조제, 배합 또는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b>전통 및 보완 의학</b></p> <p>전통 및 보완 의학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전통 및 보완 의학 위원회에 등록되고 승인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p>
조치	<p>:</p> <p>1971년 의료법[법 제50호]</p> <p>2017년 의료 규정[P.U. (A) 제188/2017호]</p> <p>2018년 치의료법[법 제804호]</p> <p>2021년 치의료 규정[P.U. (A) 제443/2021호]</p> <p>1998년 민간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법[법 제586호]</p> <p>2006년 민간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민간 의료 진료소 또는 민간 치의료진료소) 규정[P.U. (A) 제137/2006호]</p> <p>2006년 민간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민간 병원 및 그 밖의 민간 보건의료 시설) 규정[P.U.(A) 제138/2006호]</p> <p>1951년 약사등록법[법 제371호]</p> <p>2004년 약사등록 규정</p> <p>1952년 독극물법(1989년 개정)[법 제366호]</p> <p>2016년 연합보건전문직업인법[법 제774호]</p> <p>2016년 전통 및 보완의학법[법 제775호]</p> <p>행정 지침</p>

10	분야	:	통관 대리인 및 중개인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통관 대리인 및 중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통관 대리인 및 중개인 서비스를 제공 및 공급하는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도 49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1967년 관세법(1980년 개정)[법 제235호] 1977년 관세 규정[P.U.(A) 제162/77호] 관세 상시명령 제45/2003호

11	분야	:	여행 대행 및 관광객 안내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여행 대행 및 관광객 안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1992년 관광산업법 [법 제482호] 행정 지침

12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시장접근(제8.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외국에 등록된 해운 선박은 국내 해운 서비스를 제공 및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b>말레이시아 국제 선박 등록소</b></p> <p>외국인은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 현지에서 설립한 합작투자 또는 회사를 통해서만 국내 수역에서 국제 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합작투자 또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충지분 소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이 등기소에 선박을 등록하려는 모든 합작투자 또는 회사는 선박 등록 전 다음의 선박 관리자를 임명한다.</p> <p>가. 말레이시아에 영주하는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p> <p>나.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에 주 사업장을 둔 회사</p>

	<p>선박 소유자는 그의 선박이 이 부문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전체 기간 동안 선박 관리자를 선임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p> <p><b>말레이시아 선박 등기소</b></p> <p>말레이시아 선박 등기소에 등록된 선박만이 국내 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외국인은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 현지에서 설립한 합작투자 또는 회사를 통해서만 말레이시아 선박 등기소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합작투자 또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p> <p>이 등기소에 선박을 등록하려는 모든 합작투자 또는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과반수가 말레이시아인이다. 그리고</li> <li>나.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자사의 주요 사업 활동을 한다.</li> </ul>
조치	<p>:</p> <p>1952년 상선 법령[법령 제70/1952호]  1960년 상선 법령(사바)[법령 제11/1960호]  1960년 상선 법령(사라왁)[법령 제2/1960호]  2007년 상선(개정 및 연장)법[법 제A1316호]  행정 지침</p>

13	분야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에 등록되었으며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현지에서 설립된 실체만이 건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p> <p>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 또는 컨소시엄의 방식으로 외국인 지분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어떠한 실체도 건설산업개발위원회의 등록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p> <p>각 외국 실체의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말레이시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실체의 경영과 투자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p>
	조치	:	<p>1967년 엔지니어 등록법(2015년 개정) [법 제138호]</p> <p>1990년 엔지니어 등록 규정(2015년 개정) [P.U. (A) 제128/90호]</p> <p>1958년 면허 받은 토지측량사법(1992년 개정) [법 제458호]</p> <p>1967년 건축사법(2015년 개정) [법 제117호]</p> <p>1996년 건축사 규칙(2022년 개정) [P.U.(A) 제379/96호]</p>

1967년 적산사법 [법 제487호]  
1973년 적산사 규칙 [P.U. (A) 제366/73호]  
1994년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법 [법 제520호]  
행정 지침

14	분야	:	화물 도로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에서 등록 및 설립된 실체만이 말레이시아에서 화물 도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된다.  외국인은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 및 공급하는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도 49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2010년 도로 대중운송법 [법 제715호] 도로대중운송청(APAD) 면허 정책 지침

15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1.4조) 최혜국 대우(제11.5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1. 자동차의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투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최대 49퍼센트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p> <p>가. 배기량 1,800cc 이상 및 총 구매가격 RM150,000 이상인 고급 승용차</p> <p>나. 광업트럭 및 상용차</p> <p>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그리고</p> <p>라. 배기량 200cc 이상의 이륜차</p> <p>2. 바텍 직물 및 바텍 의류 제조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p>
	조치	:	1975년 산업조정법 [법 제156호] 행정 지침

16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이행요건(제11.10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가. 허가된 제조 창고(LMW) 및 자유산업구역(FIZ) 내에 소재한 회사는 수출 요건이 부과될 것이다.</p> <p>나. 석유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수출 요건이 부과될 것이다.</p> <p>다. 확장 프로젝트는 원료의 100퍼센트를 자체 농장에서 얻는 기준의 독립 팜유 경제 회사에 대해서만 검토될 것이다. 사바와 사라왁의 경우, 팜원유의 50퍼센트를 자체 농장에서 얻는 신규 통합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제조 허가가 검토될 것이다. 통합 프로젝트는 자체 농장을 동반하는 프로젝트를 지칭한다.</p> <p>라. 파인애플 캔 포장의 경우, 원료의 100퍼센트를 자체 농장에서 공급하는 프로젝트에만 승인이 부여될 것이다.</p>
	조치	:	<p>1975년 산업조정법 [법 제156호]</p> <p>1967년 관세법(1980년 개정) [법 제235호]</p> <p>1990년 자유구역법 [법 제438호]</p> <p>1974년 석유개발법 [법 제144호]</p> <p>1989년 파인애플산업(통조림공장 관리) 규정</p> <p>1957년 파인애플산업법(1990년 개정) [법 제427호]</p> <p>행정 지침</p>

17	분야	:	법률 서비스(중재는 제외한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반도 말레이시아(서말레이시아) 및 라부안 연방 영역</p> <p>외국 법무회사(로펌)와 외국인 변호사는 「1976년 법률 전문직 법」 [법 제166호]과 「2014년 법률전문직(국제 파트너십 및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의 허가 및 외국인 변호사의 등록) 규칙」 [P.U. (A) 제148/201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p> <p>인정된 관할권의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 (QFLF) 또는 말레이시아 법무회사(로펌)와의 국제 파트너십 (IP)을 설립하려면 선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 이슬람 금융에서 증명된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 법무회사(로펌)에 한정하여 최초로 최대 5건의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p> <p>인정된 관할권의 외국인 변호사만이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 국제 파트너십 또는 말레이시아 법무회사(로펌)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외국인 변호사는 어떠한 연도에서도 182일 이상을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여야 한다.</p>

	<p>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와 국제 파트너십,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무회사(로펌)에서 근무하는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는 「1976년 법률전문직법」 [법 제166호]의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p> <p>“단기출장근무”에 기반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변호사는 「1976년 법률전문직법」 [법 제166호] 제37(2B) (b) 절의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p> <p><b>사바 및 사라왁</b></p> <p>외국 법무회사(로펌)와 외국인 변호사는 사바 또는 사라왁에서 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	<p>: 1976년 법률전문직법 [법 제166호]</p> <p>2014년 법률전문직(국제 파트너십 및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의 허가 및 외국인 변호사의 등록) 규칙 [P.U. (A) 제148/2014호]</p> <p>1990년 라부안회사법 [법 제441호]</p> <p>2010년 라부안 금융 서비스 및 증권법 [법 제704호]</p> <p>1953년 사바 소송대리 법령 [사바 법령 제2호]</p> <p>1953년 사라왁 소송대리 법령 [사라왁 법령 제110호]</p>

18	분야	:	도매 및 소매 서비스
	하위분야	:	-
	정부수준	:	중앙 및 지역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외국인은 슈퍼마켓, 미니마켓, 식품점/일반 잡화점, 상설 재래 시장, 상설 노점, 매점이 함께 있거나 함께 있지 않은 주유소, 신문 판매점, 약국, 말레이시아 요리 식당, 비스트로 및 직물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외국인은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컨설턴트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프랜차이즈 매매 제안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의 매매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p> <p>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고, 그 승인이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p> <p>나. 말레이시아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승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p> <p>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 될 예정인 경우</p>

		<p>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이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랜차이즈 유형</th><th>정의</th></tr> </thead> <tbody> <tr> <td>프랜차이저 (가맹본부)</td><td>프랜차이지(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인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지 및 그의 서브프랜차이지 관계를 포함한다.</td></tr> <tr> <td>마스터 프랜차이지 (가맹점주)</td><td>프랜차이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인에게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의 서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인</td></tr> <tr> <td>외국 프랜차이저 (가맹본부)의 프 랜차이지(가맹 점주)</td><td>외국 프랜차이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다른 인에게 서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지 않는 인</td></tr> </tbody> </table> <p>편의점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저(1998년 프랜차이즈법[법률 590호]에 따른)와 관련이 없는 외국 회사만이 최대 30퍼센트의 지분을 투자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프랜차이저와 관련이 없는 외국 회사”란 1998년 프랜차이즈법[법률 590호]에 따른 프랜차이저가 아닌 외국 회사를 의미한다.</p>	프랜차이즈 유형	정의	프랜차이저 (가맹본부)	프랜차이지(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인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지 및 그의 서브프랜차이지 관계를 포함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 (가맹점주)	프랜차이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인에게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의 서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인	외국 프랜차이저 (가맹본부)의 프 랜차이지(가맹 점주)	외국 프랜차이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다른 인에게 서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지 않는 인
프랜차이즈 유형	정의									
프랜차이저 (가맹본부)	프랜차이지(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인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지 및 그의 서브프랜차이지 관계를 포함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 (가맹점주)	프랜차이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인에게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의 서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인									
외국 프랜차이저 (가맹본부)의 프 랜차이지(가맹 점주)	외국 프랜차이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다른 인에게 서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지 않는 인									
조치	:	<p>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유통업 서비스 참여에 관한 지침 1998년 프랜차이즈법[법 제590호] 2016년 회사법[법 제777호] 행정 지침</p>								